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63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최기상・안도걸・김정호

박상혁 • 허종식 • 이수진

이연희 • 김우영 • 백승아

김동아 · 임광현 · 박은정

정준호 · 정태호 · 김한규

진성준 · 임미애 · 박희승

정성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28억 원에 달하며,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약 72억 원 규모임.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인 예산집행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 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임의적 예산집행 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사용방법 등에"를 "범위·지급절차,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및 영수증의 서식 등에"로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이 경우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 나 사용한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 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 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 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 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 <u>다만</u>, 경비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신 설> 지급 <신 설>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 ⑥ 관서운영경비의 <u>범위, 지급</u> 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u>방법 등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금지급. 이 경우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 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 하여야 한다.

⑥ ------<u>범위·지</u> 급절차,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 법 및 영수증의 서식 등에----

---.